

용답동 구립 노인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

| | |
|----------|------|
| 의안 번호 | 1746 |
|----------|------|

제출연월일: 2022. 1. .
제 출 자: 성동구청장

1. 제안이유

- 가. 노인인구비율 대비 노인여가복지시설이 가장 적은 용답동에 복합 여가문화공간을 조성하여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건립되는 시설로
- 나.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서 위탁 운영하여 어르신들의 노후의 삶을 풍요롭게 해드리고 노년층의 안정된 노후생활 설계에 기여하고자 함.
- 다. 이에 용답동 구립 민간위탁 운영에 따른 동의안을 「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시설개요

- 1) 위 치: 용답동 183-3(용답꽃공원 내)
- 2) 시설내역: 지하1층 ~ 지상3층, 연면적 634.12m²

| 층 | 운영시설 | 면적(m ²) | 직 원 | 이용대상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
| 3층 | 다목적실, 프로그램실, 조리실 등 | 195.41 | 센터장1 직 원3 (예정) | 성동구민 (노년층) |
| 2층 | 체력단련실, 사무실, 프로그램실 등 | 195.41 | | |
| 1층 | 경로당(남·여), 공용부 | 126.70 | | |
| 지층 | 주차장(3면), 창고 | 116.60 | | |

- 3) 건립예산: 4,576백만 원(구비 3,626백만 원, 특교금 950백만 원)

나. 연간 운영예산: 460,860천 원(인건비, 사업비 관리비 포함)

- 근무인력: 4명 이내(센터장 포함)
- 1층 경로당 운영비 제외

다. 주요위탁 내용

1) 위탁기간: 위탁일로부터 5년

- 「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」 제21조의2제2항

2) 신청자격: 서울시 소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

3) 위탁내용: 용답동 구립 노인복지시설 시설 관리 및 사업 운영

4) 선정방법: 공개모집 후, 선정심의위원회(비상설)에서 심사·선정

라. 민간위탁 추진근거

-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34조제5항(사회복지시설의 설치)

마.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

- 1) 고령화에 따른 늘어난 노인복지서비스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련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민간 법인의 역량 필요
- 2) 경쟁을 통해 역량 있는 민간 법인의 운영 시스템을 도입하여 전반적인 노인복지서비스의 질 향상 도모
- 3) 민간 자원과 지역사회와의 연계가 용이하여 다양한 노인복지 서비스 제공 가능
- 4) 구 직영으로 인한 행정의 비대화, 운영의 경직성 및 비효율 예방

3. 참고사항

가. 관련법령

- 1)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34조제5항
- 2) 「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제3항

나. 예산조치

- 1) 운영예산: 연간 460,860천 원(구비)
 - ※ '22년 위탁비 345,645천 원 (9개월 운영비)
- 2) 세부내역: 인건비, 운영비, 사업비 등
- 3) 예산확보: '22년 본예산 확보

< 관계 법령 >

□ 사회복지사업법

제34조(사회복지시설의 설치) ⑤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.

□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

제4조(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) ③ 구청장은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임사무는 위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, 자치사무는 성동구의회 동의권을 얻어야 한다. 다만, 자치사무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성동구의회 동의를 갈음한다.